

담보취소신청

I. 근거규정

<민사소송법>

제125조(담보의 취소) ① 담보제공자가 **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**(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**유리하게 확정**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)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, 법원은 **담보취소결정**을 하여야 한다.

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**담보권리자의 동의**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
③ **소송이 완결된 뒤**(담보권의 객체인 피담보채권(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)이 확정되고 그 금액의 계산에 장애가 없어진 상태)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,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**최고**하고,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**동의**한 것으로 본다(**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**).

④ **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**

제444조(즉시항고)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**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**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II. 관할법원

<민사소송규칙>

제23조 (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.

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III. 인지, 송달료와 첨부서류 등

① **인지 금1,000원**(담보취소동의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)

② **송달료**(2×2회분×3,060원)= **금12,240원**

담보취소사건(**카담**)이므로 당사자 1인당 **2회분**의 송달료

③ **첨부서류**

담보권리자의 동의	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(소송이 완결)	담보할 사유 소멸
- 담보취소신청서 - 담보취소동의서 - 즉시항고권포기서 - 인감증명서 2통 - 공탁서 사본 - 송달료납부서	- 담보취소신청서 - 패소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(또는 가압류해제증명원) - 권리행사최고서 - 공탁서 사본 - 송달료납부서	- 담보취소신청서 - 승소판결정본 - 및 확정증명원 - 공탁서 사본 - 송달료납부서